

動力資源部公告 제84-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改正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년 5월 29일

動力資源部長官

1. 법령제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령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에너지절약 기자재의 개발유도를 위하여 현행 제도는 에너지消費效率 측정가능 기자재(보일러등)에 대하여만 에너지효율 표시 의무화가 되어 있는 바 이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이 어려운 기자재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제 6 조).

나. 에너지 多消費地의 에너지사용계획 사전검토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는 에너지 多消費 공장·시설의 新·增設時 사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 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改正하려는 것임(제 8 조).

다. 에너지관리개선을 위한 是正命令 대상자에 대하여(제 14 조) 현행제도는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는 바, 同시정명령 대상자를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자외에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손실 요인이 나타난 에너지사용자도 대상자로 하도록 확대 개정하려는 것임.

라. 에너지관리 진단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제도는 진단명령 대상자가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진단기관이 에너지관리공

단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여 대상자를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손실 요인이 나타난 에너지사용자까지 포함하고 진단기관으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진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려는 것임(제 15 조).

마. 車輛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급된 목표走行거리에 대하여(제 18 조)

현행제도는 불이행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그 이행의 철저를 기할 수 없으므로 목표 주행거리 불이행(미달) 차량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 이행을 촉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바.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의 效率的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사전검토제 도입

사업추진지원강화(집단에너지공급 지역안에서 허가없는 일정한 행위 제한) 사업관리 강화(열공급사업의 휴지·폐지·양수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 불량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효율적인 團束을 위하여 공무원외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형식승인 기관)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조업체등에 出入·檢査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제 73 조).

아. 非常時 에너지소비 抑制를 위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개정하려는 것임(제 7 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4년 6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